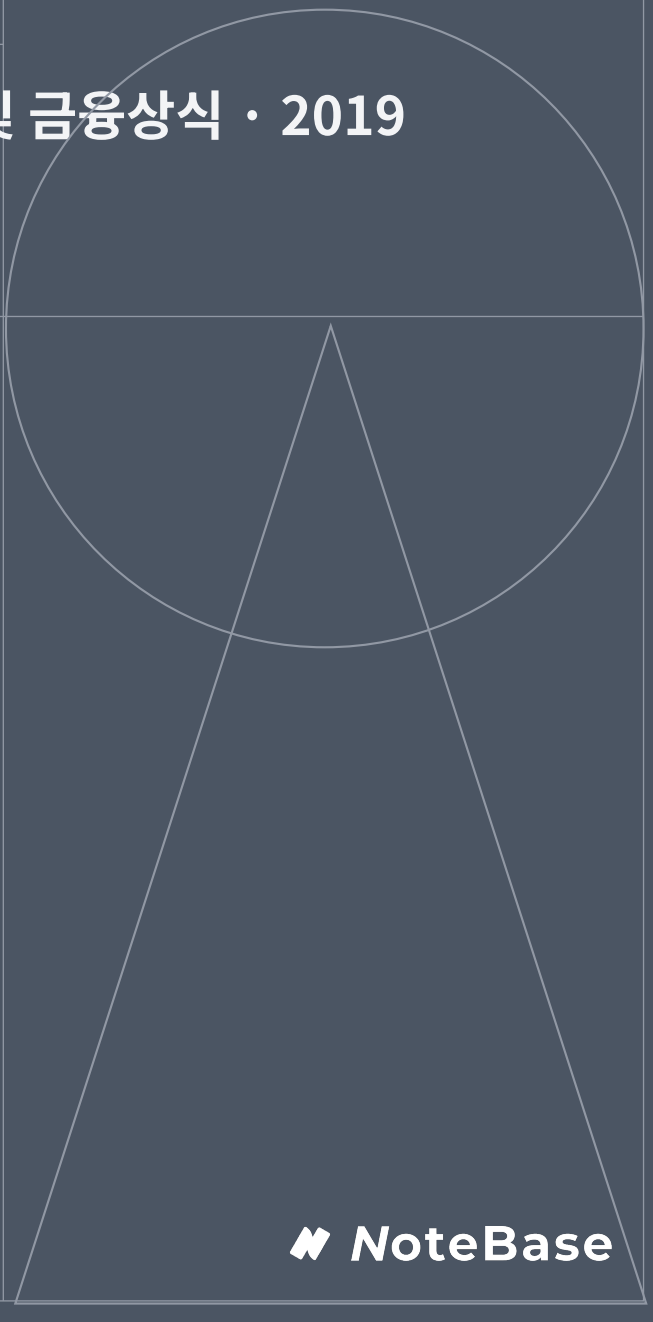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9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9

문 1.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ㄴ.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ㄷ.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는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업 보호를 위한 서신송달 독점,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부과 면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의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서신독점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서신독점 = 원칙적으로 국가가 우편사업을 경영하고, 법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타인을 위한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등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편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일정 중량·고요금 서신의 송달 허용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서신독점의 보호 대상이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우편관서에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서신송달 허용 예외에서 제외되어 서신독점의 보호를 받고, 제한능력자가 우편 이용에 관하여 우편관서에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에서 제외되므로 서신독점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 올바른 표현: '서신에서 제외되어 서신독점의 대상이 아니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될 뿐 아니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틀린 표현: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 올바른 표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우편 전용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 제외 대상이므로 서신독점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및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 올바른 표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및 '서신독점의 대상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압류 금지'만 보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뒤의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ㄹ에서는 16쪽 이상이라는 숫자를 독점 요건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책자형 상품안내서를 서신에서 제외하는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호규정은 '독점 대상인지', '압류와 부과가 모두 면제되는지',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누구의 행위로 보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상품안내서는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이면 서신 제외 대상이라는 방향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자체 등기취급 서신은 독점 보호, 우편 전용 물건은 압류·부과 면제, 제한능력자의 우편관서 상대 행위는 능력자 행위, 16쪽 이상 책자형 상품안내서는 서신 제외이다.

NoteBase

문 2.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통상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량 25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② 중량 3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③ 중량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④ 중량 25g 초과 50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법 시행령」상 기본통상우편요금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물의 중량 구간과 규격 여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은 「우편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한 기준 요금으로, 특정 중량 구간의 규격우편물에 적용되는 일반우편요금을 뜻한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기본통상우편요금을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격우편물', '5*g* 초과', '25*g* 이하', '일반우편요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중량 기준뿐 아니라 우편물의 종류도 규격외우편물이 아니라 규격우편물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중량 25*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올바른 표현: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② X
하한은 3*g* 초과가 아니라 5*g* 초과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중량 3*g* 초과 25*g* 이하
올바른 표현: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

③ O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이라는 시행령의 요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중량 구간과 우편물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 기본통상우편요금은 25*g* 초과 50*g* 이하의 규격외우편물에 적용되는 요금이 아니다.
틀린 표현: 중량 25*g* 초과 50*g* 이하인 규격외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올바른 표현: 중량이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

오답 포인트

②의 '3*g* 초과'처럼 하한만 살짝 바꾸거나, ①·④처럼 '규격우편물'을 '규격외우편물'로 바꾸는 표현이 함정이다. 중량의 상한만 보고 고르면 안 되고 하한과 규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통상우편요금 문항에서는 '5*g* 초과~25*g* 이하 → 규격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의 세 요소를 차례로 대조한다. 하나라도 다르면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기본통상우편요금 = 5*g* 초과 25*g* 이하 + 규격우편물 + 일반우편요금이다.

NoteBase

문 3. 통상우편물 접수 시 규격외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의 개수로 옳은 것은?

ㄱ. 봉투의 재질이 비닐인 우편물
ㄴ. 봉투를 봉할 때 접착제를 사용한 우편물
ㄷ. 수취인 우편번호를 6자리로 기재한 우편물
ㄹ.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인 우편물
ㅁ. 봉투 색상이 70% 이하 반사율을 가진 밝은 색 우편물
ㅂ. 정해진 위치에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우표를 붙이지 않은 우편물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통상우편물의 필수 규격요건을 위반하여 규격외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우편물의 수를 묻는다. 핵심은 필수 규격요건과 권장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규격외 우편물 = 통상우편물의 크기·재질·우편번호 기재·표면 등의 필수 규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규격외로 취급되는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따르면 봉투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종이여야 하고, 수취인 우편번호는 5자리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두께는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최대 5*mm*이다. 봉할 때 풀이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반면 반사율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과 정해진 위치에 우표 또는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요건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규격외가 되지는 않는다.

규격외 요금 대상 여부는 ㄱ O, ㄴ X, ㄷ O, ㄹ O, ㅁ X, ㅂ X이다. 따라서 규격외 요금 대상은 ㄱ·ㄷ·ㄹ의 3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규격외 요금 대상은 1개가 아니라 ㄱ·ㄷ·ㄹ의 3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ㄱ의 비닐 재질, ㄷ의 6자리 우편번호, ㄹ의 10*mm* 두께가 각각 필수 규격요건에 어긋나므로 2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ㄱ은 종이 재질 요건, ㄷ은 5자리 우편번호 요건, ㄹ은 자연 상태 최대 5*mm*의 두께 요건을 위반한다. ㄴ은 허용되는 봉함 방법이고, ㅁ과 ㅂ은 권장요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규격외 요금 대상은 모두 3개이다.

④ X
ㅁ과 ㅂ은 권장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일 뿐 그 사정만으로 규격외 취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4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오답 포인트

ㅁ의 '반사율 70% 이하'가 권장 기준인 '70% 이상'과 반대이고, ㅂ도 권장된 표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둘을 곧바로 규격외 요금 대상에 포함하기 쉽다. 그러나 규격외 여부는 필수 규격요건 위반으로 판단하며, 권장요건 불충족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을 먼저 필수 규격요건과 권장요건으로 나눈다. 필수 규격요건인 종이 재질·5자리 우편번호·자연 상태 최대 5*mm* 두께를 위반한 항목만 세고, 권장요건을 지키지 않은 항목은 그 이유만으로 규격외 수에 넣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필수 규격은 종이·우편번호 5자리·두께 최대 5*mm*, 색상과 우표·요금 표시 위치는 권장요건이다.

NoteBase

문 4. 우편사서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ㄴ.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 중 국내특급(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소포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해야 한다.
ㄷ.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 계약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의 해지,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힌 우편물의 배달, 사서함 사용계약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해지할 수 있다'와 '해지해야 한다', '우선 계약할 수 있다'와 '우선 계약해야 한다'를 구별하고 주소지 배달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사서함 = 우체국에 설치된 개인·기관용 우편물 수취함이다.
재량 규정 = 요건을 충족해도 우체국장이 사정을 고려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상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우체국장은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도 사서함에 넣을 수 있다. 현행 우정사업본부 우편일반 학습교재상 주소지에 배달하는 예외는 특별송달, 보험취급,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이다. 국내특급과 등기소포를 이 예외에 포함하면 틀린다.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 관할구역인 신청자의 순서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고른 조합이지만 ㄱ뿐 아니라 ㄴ과 ㄷ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틀린 표현: 옳지 않은 것을 ㄱ만으로 본 조합
올바른 표현: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② X
ㄴ, ㄷ만 고른 조합이지만 ㄱ도 '해지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여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틀린 표현: 옳지 않은 것을 ㄴ, ㄷ만으로 본 조합
올바른 표현: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③ X
ㄱ, ㄷ만 고른 조합이지만 ㄴ도 주소지 배달 예외에 국내특급과 등기소포를 포함하여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틀린 표현: 옳지 않은 것을 ㄱ, ㄷ만으로 본 조합
올바른 표현: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④ O
ㄱ은 '해지할 수 있다'를 '해지해야 한다'로 바꾸었고, ㄴ은 주소지 배달 예외의 범위를 넓혔으며, ㄷ은 '우선 계약할 수 있다'를 '우선 계약해야 한다'로 바꾸었다. 따라서 옳지 않은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④가 맞다.

오답 포인트

ㄱ과 ㄷ의 순서·기간·대상은 맞아 보여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 강행 표현이 함정이다. ㄴ은 여러 특수취급 우편물을 한꺼번에 열거하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힌 경우 주소지 배달 예외에 국내특급과 등기소포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사서함 문제에서는 먼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대조한다. 다음으로 사서함번호가 적혔는지, 주소도 함께 적혔는지를 구분한 뒤 특별송달·보험취급·맞춤형 계약등기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ㄱ~ㄷ 각각의 진위를 확정한 뒤 조합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30일 미수령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순위 계약도 할 수 있다. 사서함번호와 주소가 함께 있으면 특별송달·보험취급·맞춤형 계약등기는 주소지에 배달한다.

NoteBase

문 5.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 용기에 담을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②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 거점에서 운송 용기를 서로 교환한다.

③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등기우편물 배달증을 생성하고, 생성된 배달증과 현품 수량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④ 일반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자에 담되, 우편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 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의 발송 단계에서 운송용기 처리, 책임자 참관, 송달증 작성과 현품 수량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송은 구분이 끝난 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아 다음 운송 단계로 넘기는 과정이다. 이때 송달증은 우편물의 인계·인수와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고, 배달은 우편물을 최종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발송 단계의 송달증과 수취인 배달 단계의 증명·기록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부가취급우편물을 운송용기에 담을 때에는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한다. 기록취급 우편물의 수량과 인계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O —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은 운송 거점에서 운송용기를 교환함으로써 각 운송 구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어서 운송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등기우편물 배달증'이다. 배달은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는 단계이므로 발송 단계에서 생성하여 현품과 대조하는 서류의 명칭으로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부가취급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확인한 후 발송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일반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상자에 담는다. 물량이 적으면 형태별로 묶어 함께 담고, 운송용기 국명표에는 여러 종류가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혼재 표시를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배달증'이라는 익숙한 말을 넣어 발송 단계의 서류처럼 보이게 한 선지이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은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단계가 아니라 운송을 위해 우편물을 인계하는 발송 단계이므로 '송달증'이 핵심 용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물 처리 단계와 서류 명칭을 연결해 판단한다. 운송을 위한 발송·인계와 현품 수량 대조가 나오면 송달증, 최종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상황이 나오면 배달 단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발송·인계는 송달증, 수취인 교부는 배달이다.

NoteBase

문 6.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순위로 구분된다.

②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특별운송이라고 한다.

③ 임시운송은 물량의 증감에 따라 특급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④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은 운송 구간, 수수국, 수수 시각, 차량 톤수 등을 우편물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와 정기운송·임시운송·특별운송의 구분, 운송방법 지정 주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물의 일시적 폭주에 대응하는 특별운송과 물량 증감에 따른 임시운송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기운송은 미리 정한 운송구간·수수국·수수시각·차량 톤수 등에 따라 계속 시행하는 운송이다.
임시운송은 우편물량의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특별운송은 우편물의 일시적 폭주, 교통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운송이다.

핵심 구분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며 별도의 기타순위는 없다. 임시운송은 물량 증감에 따른 정기운송편 외의 운송이고, 특별운송은 일시적 폭주나 교통 장애 등 특별한 사정에 대응하는 운송이다. 현행 우편업무 규정상 우편물 운송방법을 협의·결정하고 운송방법 지정서를 관계 관서에 시달하는 주체는 지방우정청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므로 별도의 기타순위를 둔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순위'
올바른 표현: '1순위, 2순위, 3순위'

② O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항공기·선박·전세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은 특별운송이다.

③ X
임시운송은 우편물의 종류별로 특급우편물·등기우편물·일반우편물을 나누어 운송하는 개념이 아니다.
틀린 표현: '물량의 증감에 따라 특급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운송하는 것'
올바른 표현: '물량의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

④ X
운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차량 톤수 등을 우편물 운송방법 지정서에 정하여 운송을 시행하도록 하는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다.
틀린 표현: '우정사업본부장'
올바른 표현: '관할 지방우정청장'

오답 포인트

②의 '일시적으로 폭주'와 '항공기'만 보고 임시운송으로 오인하기 쉽다. 임시운송은 물량 증감에 따라 정기운송편 밖에서 운송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폭주나 교통 장애 같은 특별한 사정에 전세차량·선박·항공기 등을 투입하는 것은 특별운송이다. 또한 ④는 지정 권한자를 우정사업본부장으로 바꾼 주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리 지정된 방식으로 계속 시행'이면 정기운송, '물량 증감에 따라 정기편 외의 방법'이면 임시운송, '일시적 폭주·교통 장애와 전세차량·선박·항공기 투입'이면 특별운송으로 판단한다. 운송방법 지정 주체를 물으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폭주·장애는 특별운송, 물량 증감은 임시운송, 운송방법 지정은 지방우정청장이다.

NoteBase

문 7. 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서적, 홍보용 팸플릿, 상업 광고물, 도면, 포장박스 등이다.

② 그림엽서의 경우, 앞면 윗부분에 우편엽서를 뜻하는 단어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한다.

③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 법규 위반 엽서, 법규 위반 항공서간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④ 소형포장물의 경우, 제조회사의 마크나 상표는 내부나 외부에 기록이 가능하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통상우편물 중 인쇄물·우편엽서·서장·소형포장물의 정의와 종별 취급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쇄물은 종이·판지 등 인쇄에 쓰이는 재료에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이다.
우편엽서는 앞면 윗부분에 'Carte postale'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어 표시가 필요하지만 그림엽서는 예외이다.
서장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이며, 엽서나 항공서간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도 서장으로 취급한다.
소형포장물은 작고 가벼운 물품을 간편하게 보내는 국제통상우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포장박스'가 틀린 표현이다. 서적, 홍보용 팸플릿, 상업 광고물, 도면 등은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지만 포장박스는 인쇄물 접수 대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서적, 홍보용 팸플릿, 상업 광고물, 도면 등이다'이다.
② X — '그림엽서의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는 취지가 틀렸다. 일반 우편엽서는 앞면 윗부분에 우편엽서를 뜻하는 'Carte postale'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어 표시를 해야 하지만 그림엽서는 이 표시 의무의 예외이다.
③ O —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이 서장에 해당하며, 엽서 또는 항공서간의 정해진 요건을 위반한 우편물도 서장으로 취급한다.
④ X —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다'가 틀린 표현이다. 제조회사의 마크나 상표뿐 아니라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도 소형포장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 기록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일반 우편엽서 표시 원칙을 그림엽서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④의 '내부에만'이라는 제한 표현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예외와 기록 위치를 제한하는 단어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종별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그림엽서', '법규 위반', '내부에만'처럼 예외나 범위를 바꾸는 표현을 따로 점검한다. 정해진 엽서·항공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장으로 취급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그림엽서는 표시 예외, 법규 위반 엽서·항공서간은 서장, 소형포장물 참고사항은 안팎 모두 가능이다.

NoteBase

문 8. 국제우편 종류별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소포우편물 취급 시 중량이 '8kg 883g'인 경우, '8,900g'으로 기록한다.

② 우편자루배달인쇄물 접수 시 하나의 소포우편물로 취급하며, 우편요금과 별도로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한다.

③ 국제특급우편(EMS)은 내용품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 2가지로 구분되며, 운송장의 번호는 KE 또는 KS 등 K*로 시작된다.

④ K-Packet의 발송인 란에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종류별 접수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소포의 중량 표시 단위,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의 우편물 종별, EMS 운송장 번호, K-Packet 발송인 기재 원칙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자루배달인쇄물(M-bag)은 동일한 발송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다량의 인쇄물을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 인쇄물을 넣은 우편자루를 한 개의 우편물로 취급하는 국제통상우편물이다.
K-Packet은 소형물품의 해외 배송에 이용하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주소와 세관신고 정보를 기표지에 함께 표시한다.

핵심 구분

보험소포우편물의 중량은 10*g* 단위로 표시하고 10*g* 미만의 단수는 올림한다. 따라서 8*kg* 883*g*은 8,890*g*으로 기록한다.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소포우편물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 EMS 운송장 번호는 E로 시작하며, 서류용은 주로 EE, 비서류용은 일반적으로 EM 또는 ES로 시작한다. K-Packet에는 통관·손해배상·반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명의 발송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험소포우편물은 10*g* 단위로 표시하고 그 미만의 단수를 올리므로 8*kg* 883*g*은 8,890*g*이 된다.
틀린 표현: '8,900*g*'
올바른 표현: '8,890*g*'으로 기록한다.

② X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우편자루 하나를 하나의 국제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우편요금과 별도로 징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우편물 종별이 틀렸다.
틀린 표현: '하나의 소포우편물'
올바른 표현: '하나의 국제통상우편물'로 취급한다.

③ X
EMS 운송장은 내용품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구분하지만, 번호는 K가 아니라 E로 시작한다.
틀린 표현: 'KE 또는 KS 등 K*로 시작된다'
올바른 표현: 서류용은 주로 EE, 비서류용은 일반적으로 EM 또는 ES 등 E로 시작된다.

④ O
K-Packet의 발송인 란에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의 발송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보통소포의 100*g* 단위 절상과 보험소포의 10*g* 단위 절상을 혼동하기 쉽다. ②에서는 4,000원이라는 맞는 수수료에 끌려 '소포우편물'이라는 틀린 종별을 놓치기 쉽다. ③에서는 K-Packet의 K와 EMS 운송장 번호의 E를 바꾸어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우편 접수방법 선지는 중량 단위·우편물 종별·운송장 번호의 첫 글자·발송인 기재사항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한 문장에 맞는 수수료와 틀린 종별처럼 두 기준이 섞여 있으면 모든 부분이 맞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험소포는 10*g* 단위 절상, M-bag은 국제통상우편물, EMS 번호는 E, K-Packet 발송인은 한 명이다.

NoteBase

문 9. 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경우, 발송인은 수리일 다음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우편물을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②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1~5개 지역 및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구분되며, 최고 7천만 원까지 내용품의 가액에 한해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③ EMS 프리미엄의 부가서비스인 고중량특송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체국과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④ 2003년부터 EMS 배달보장서비스가 시행되어 운영 중이며, 실무에서 처리할 경우, 도착 국가에서 통관 보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배달은 배달완료로 간주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특급우편(EMS)의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EMS 프리미엄 보험, 고중량특송, 배달보장서비스의 세부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기간의 기산일, 보험 한도, 이용 대상, 시행일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는 수출신고한 물품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 통지하는 제도이다. 고중량특송은 일반 EMS의 제한중량을 넘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EMS 프리미엄 부가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이 문항의 출제 기준에서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선적·기적 기한은 수리일 다음 날이 아니라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이다. EMS 프리미엄 보험 한도는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며, 고중량특송은 전국 우체국에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었다. EMS 배달보장서비스의 시행일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 7월 25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대상 우편물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기산점을 하루 늦춘 '수리일 다음날로부터'가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 수리일 다음날로부터 30일 내
올바른 표현: 수리일부터 30일 내

② X
EMS 프리미엄은 1~5개 지역과 서류용·비서류용으로 구분되지만, 내용품 가액에 대한 보험취급 최고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최고 7천만 원'이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 최고 7천만 원까지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③ O
이 문항의 출제 기준에서 EMS 프리미엄의 고중량특송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고, 우체국과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옳다.

④ X
통관 보류나 수취인 부재 등 도착국 사유로 배달되지 않은 우편물을 배달완료로 간주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EMS 배달보장서비스의 시행 시점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 7월 25일이다.
틀린 표현: 2003년부터 시행
올바른 표현: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

오답 포인트

①의 '다음날', ②의 '7천만 원', ④의 '2003년'처럼 나머지 설명에 섞인 숫자 하나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④는 미배달 간주 사유가 맞더라도 시행연도가 틀리므로 선지 전체는 X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MS 제도 선지는 서비스의 큰 취지만 보지 않고 기산일·기간, 보험 한도, 계약 필요 여부, 시행일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한 문장에 두 사실이 결합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틀려도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출확인은 수리일부터 30일, 프리미엄 보험은 5천만 원, 배달보장은 2005년 7월 25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0. 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② 예금주의 아들과 손자는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이 손자보다 선순위로 상속받게 된다.

③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진다.

④ 협의 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주의 사망 시 적용되는 친양자의 상속관계,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특정유증의 효력, 미성년 공동상속인의 대리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친양자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양자이다.
특정유증 =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지정하여 무상으로 주는 유언이다.
특별대리인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908조의3에 따라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지만,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이 같은 상속순위에 속하더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갖지만,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적 지위에 있다. 공동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 전의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예금을 상속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예금은 상속할 수 있으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된 친생부모의 예금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② O
아들과 손자는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아들은 1촌이고 손자는 2촌이므로 최근친인 아들이 우선한다. 아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등에는 손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다.

③ O
특정유증의 목적재산은 유언자의 사망만으로 수증자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않는다.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수증자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④ O
친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서로의 상속분을 정하는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반양자와 친양자를 혼동하게 만든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②에서는 '같은 상속순위'와 '같은 촌수'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입양이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하고,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최근친 우선 여부와 대습상속의 예외를 살핀다. 유증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구별하며,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직계비속은 최근친 우선, 특정유증은 이행청구,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공동상속분할은 특별대리인이다.

NoteBase

문 11.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업자는 선물환 매입계약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②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있다.

③ 풋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④ 상장지수증권(ETN)은 외부수탁기관에 위탁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없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환헤지,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풋옵션의 손익 구조, ETF와 ETN의 신용위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헤지: 미래의 불리한 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하는 위험회피 방법이다.
풋옵션: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매수자에게 유리하고 매도자에게 불리하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은 0보다 낮아질 수 없으므로 만기 기준 매수자의 최대이익과 매도자의 최대손실은 행사가격과 프리미엄에 의해 제한된다.
ETF와 ETN: ETF는 펀드 재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분리 보관하지만,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입업자는 장래에 외화를 지급해야 하므로 선물환 매입계약으로 미래의 외화 매입환율을 미리 정해 환율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O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이다.

③ X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 아래로 하락할수록 매수자의 이익이 커지고 매도자의 손실도 커진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의 하한은 0이므로 그 크기가 무한정 커지지는 않는다. 만기 기준 매수자의 최대이익은 행사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뺀 금액이고, 매도자의 최대손실도 그에 대응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④ X
틀린 표현은 '외부수탁기관에 위탁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없다'이다. 외부 수탁기관에 자산을 분리보관하여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없는 상품은 ETF이고,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므로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이 있다. 다만 ETN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된다는 부분은 옳다.

첨부된 원문 문면대로 판단하면 ③과 ④가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④만을 정답으로 제시한 공식 채점 답과 ③의 표준적인 풋옵션 손익 구조가 충돌하므로 원문과 정답표의 수동 확인이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④는 '거래소 상장·실시간 매매'라는 공통점을 이용해 ETF의 자산 분리보관 특성을 ETN의 특성처럼 섞어 놓았다. 거래 방식이 비슷하더라도 발행 구조와 신용위험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TF와 ETN을 비교할 때는 먼저 자산의 분리보관 여부와 발행주체를 확인한다. 펀드 재산을 외부 수탁기관에 분리 보관하면 ETF이고,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수익 지급을 약속하면 ETN이므로 발행회사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암기 포인트

ETF는 자산 분리보관, ETN은 증권회사 신용으로 발행한다. ETN에는 발행회사 신용위험이 있다.

NoteBase

문 12. A씨의 2018년 귀속 금융소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 o 정기예금 이자: 55,100,000원
> o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
> o 환매조건부채권 이자(RP): 30,000,000원
> o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
>
> 단, 종합소득 공제는 5,100,000원, 누진 공제액은 5,220,000원으로 한다.

① 9,580,000원 ② 11,980,000원
③ 14,380,000원 ④ 16,780,000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2018년 귀속 금융소득 가운데 종합과세 대상만 가려 낸 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비교과세 산식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정기예금 이자 55,100,000원과 환매조건부채권(RP) 이자 30,000,000원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다.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제외한다.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특례 대상이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55,100,000원 + 30,000,000원 = 85,100,000원이다.
종합소득 공제는 5,100,000원이고, 2018년 귀속 24% 세율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문제에서 제시한 5,22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초과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20,000,000원에는 14%를 적용한다.
이 문제에서는 다음 산식을 사용한다.

$$(85{,}100{,}000 - 20{,}000{,}000 - 5{,}100{,}000) \times 24\% - 5{,}220{,}000 + 20{,}000{,}000 \times 14\%$$

NoteBase

계산 과정

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85,100,000원이다.
2. 기본세율을 적용할 금액은 85,100,000원 - 20,000,000원 - 5,100,000원 = 60,000,000원이다.
3. 초과분에 대한 세액은 60,000,000원 × 24% - 5,220,000원 = 9,180,000원이다.
4.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대한 세액은 20,000,000원 × 14% = 2,800,000원이다.
5. 산출세액은 9,180,000원 + 2,800,000원 = 11,980,000원이다.

참고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14%를 적용한 비교세액은 85,100,000원 × 14% = 11,914,000원이므로, 더 큰 금액인 11,980,000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선지 판단

① X

9,580,000원은 올바른 계산값보다 2,400,000원 작다. 이는 기본세율 적용 대상 금액을 60,000,000원이 아니라 50,000,000원으로 10,000,000원 적게 잡은 값이다.

틀린 값: 9,580,000원

올바른 값: 11,980,000원

② O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85,100,000원에 비교과세 산식을 적용하면 11,980,000원이 산출된다.

③ X

14,380,000원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 10,000,000원을 합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값: 14,380,000원

올바른 값: 11,980,000원

④ X

16,780,000원은 비과세 대상인 우리사주 배당금 20,000,000원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값: 16,780,000원

올바른 값: 11,980,000원

오답 포인트

네 금융소득을 모두 더하는 것이 함정이다. 우리사주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출자금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 뒤 정기예금 이자와 RP 이자만 합산해야 한다. 또한 20,000,000원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는 14%를 적용하여 2,800,000원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금융소득을 비과세·분리과세 또는 합산 제외·종합과세로 분류한다. 그다음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과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의 14%를 더한 뒤 비교세액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금융소득 계산은 과세 구분이 먼저이다. 종합과세 대상만 합산하고, 20,000,000원에는 14%, 초과분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13. 우체국 예금상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ㄴ.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ㄷ. 우체국 Smart퍼즐적금, 우체국 e-포인트적금, 스마트정기예금, e-Postbank예금은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이 불가하다.
ㄹ. 우체국 포미 체크카드는 싱글족 맞춤혜택 카드로, 교통기능은 후불 적용되며 점자카드는 발급이 불가하고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의 우대 조건과 가입 채널, 법인용 체크카드 및 포미 체크카드의 기능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O: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다.
ㄴ X: 소상공인정기예금의 우대 기준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평균 잔고 실적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은 이 상품의 우대 기준이 아니다.
ㄷ X: Smart퍼즐적금, e-포인트적금, 스마트정기예금은 비대면 전용이지만, e-Postbank예금은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ㄹ O: 포미 체크카드는 싱글족 맞춤형 카드로서 후불교통 기능과 해외 사용 기능이 있고 점자카드는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ㄱ과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렸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은 '우체국 요구불예금 평균 잔고 실적'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X: ㄴ과 ㄷ이 모두 틀렸고, 옳은 ㄱ과 ㄹ이 빠져 있다. ㄴ의 우대 기준은 우체국 요구불예금 평균 잔고 실적이고, ㄷ의 e-Postbank예금은 우체국 창구 가입이 가능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③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네 상품 모두 창구 가입 불가'가 아니라 e-Postbank예금은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④ O: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에 관한 ㄱ과 포미 체크카드의 기능에 관한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확한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다른 사업자 대상 상품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조건을 소상공인정기예금에 섞은 표현이 함정이다. ㄷ에서는 이름에 e나 Smart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상품을 모두 창구 가입 불가 상품으로 묶으면 안 된다. 특히 e-Postbank예금과 e-Postbank정기예금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ㄱ부터 ㄹ까지 각각 참·거짓을 판정한 뒤 조합을 대조한다. 상품명에 e나 Smart가 포함되어도 가입 채널을 일괄 판단하지 않고, 예금과 정기예금의 명칭 및 상품별 가입 방법을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인카드 현금 기능은 개인사업자만, 소상공인정기예금은 노란우산·요구불예금 실적, e-Postbank예금은 창구 가능, 포미는 후불교통·해외 가능·점자 불가이다.

NoteBase

문 14.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다.

②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③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억 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④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보호에서 제외되는 예금자, 보험금 지급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부보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다.

핵심 구분

은행·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과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 보호 대상 여부는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상품과 예금자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외화예금은 보호되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보호 대상 예금에서 제외된다. 현행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이며, 보험금 지급 주체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 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수협은행은 은행이고,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포함된다.

② X
외화예금을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외화예금은 보호 대상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올바른 표현: 외화예금은 보호 금융상품이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③ X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가 예치한 금전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호 한도 안에서 일부를 보장받는다는 설명 자체가 틀렸으며, 현행 일반 보호 한도도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틀린 표현: 서울시의 정기예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올바른 표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④ X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이다.
틀린 표현: 금융감독원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한다.
올바른 표현: 예금보험공사가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외화예금을 CD·RP와 같은 비보호 상품으로 묶은 점, ③에서는 일반 보호 한도만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④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예금자가 제외 대상인지, 지급 주체와 한도가 맞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라는 구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외화예금은 보호, CD·RP·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 지자체 예금은 제외, 지급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이다.

NoteBase

문 15.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과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의 연금 개시 나이는 만 55세부터이다.

②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의 경우, 임신 24주 태아는 주계약의 가입대상이고 무배당 선천이상특약Ⅱ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③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의 경우, 주계약은 종신까지 갱신 가능하고 특약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하다.

④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예정해약환급금은 1종(50% 저해약환급형)이 2종(표준형)보다 적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보험상품별 연금 개시 나이, 태아의 가입 범위, 갱신 가능 나이, 저해약환급형의 적용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험나이는 계약상 나이 계산 방식에 따른 나이이므로 만 나이와 같은 표현이 아니다. 태아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 가능 임신 주수가 다를 수 있다. 저해약환급형은 보험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 낮은 환급금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의 개시 나이를 '만 55세부터'라고 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은 보험나이 55세부터이고,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부터이므로 두 기준을 같은 만 나이로 묶을 수 없다.

② O - 임신 24주 태아는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의 주계약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임신 23주 이내 태아만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선천이상특약 II 에는 가입할 수 없다.

③ X - 틀린 표현은 특약을 '100세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주계약은 종신까지 갱신할 수 있지만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의 갱신 가능 나이는 80세까지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보험기간 중' 해지하면 언제나 1종의 예정해약환급금이 더 적다고 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때에만 1종의 예정해약환급금이 2종보다 적고, 납입기간이 끝난 뒤에는 2종의 예정해약환급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보험나이와 만 나이를 바꾸어 놓았고, ④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을 더 넓은 '보험기간 중'으로 바꾸어 놓았다. ③의 100세도 실제 특약 갱신 한도인 80세를 늘린 수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마다 나이의 기준이 보험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갱신 범위를 따로 본다. 저해약환급형은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24주 태아는 주계약 O·선천이상특약 II X, 간편사망보장특약은 80세, 저해약환급은 납입기간 중이다.

NoteBase

문 16. 우체국보험의 계약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부활 신청의 주체와 기간, 보험수익자 변경의 동의 요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기간, 중대사유 해지의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약관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 보험료가 연체될 때 해약환급금 범위의 환급금대출로 보험료를 자동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체국보험 주계약 약관에 따르면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일정한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청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 변경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그 이후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는 중대사유가 있으면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주체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이다. 또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약관이 정한 요건에서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청약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피보험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보험계약자는 약관이 정한 요건에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② X
-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동의해야 하는 사람은 변경 전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이다.
- 틀린 표현: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올바른 표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O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한다. 그 이후 기간에도 자동대출납입을 이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다시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X
-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 후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다.
- 틀린 표현: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올바른 표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②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를 바꾸어 놓았다. ④는 1개월이라는 해지 기간은 맞지만 지급액을 ‘해약환급금’ 대신 ‘책임준비금’으로 바꾼 선지이다. 일부만 맞는 문장도 전체로는 틀리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유지 관련 선지는 주체, 기간, 동의 대상, 해지 후 지급액을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부활은 계약자·3년,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사전 서면 동의, 자동대출납입은 1년 후 재신청, 중대사유 해지는 안 날부터 1개월·해약환급금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활은 계약자 3년,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 동의, 자동대출은 1년 후 재신청, 중대사유 해지는 1개월·해약환급금이다.

NoteBase

문 17. 현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체국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보험의 가입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이다.

② 우체국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다.

③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연금보험 제외)로 피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다.

④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우체국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연금액 한도 및 재보험 가입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재보험 = 우체국보험이 인수한 보험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인수시키는 보험이다.
계약보험금 한도액 = 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는 보험금의 상한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제35조는 우체국보험을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제36조에 따르면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1명당 4천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명당 1년에 900만원 이하이다. 제60조의2의 재보험 가입한도는 영업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재보험 가입한도의 기준은 영업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이다.
틀린 표현: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
올바른 표현: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

② X
시행규칙상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의 세 가지이며 단체보험은 별도의 보험 종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올바른 표현: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③ X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1명당 4천만원이다.
틀린 표현: 피보험자 1인당 5천만원
올바른 표현: 피보험자 1명당 4천만원

④ O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즉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명당 1년에 900만원 이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5천만원을 익숙한 금융상품의 보호한도와 혼동하거나, ①의 '영업보험료'를 재보험 한도의 기준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계약보험금 4천만원, 최초 연금액 연 900만원, 재보험 사고보장보험료의 80%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저축성·연금의 세 가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한도 문제에서는 계약보험금·최초 연금액·재보험 가입한도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보험은 보장성·저축성·연금, 계약보험금은 원칙 4천만원, 비세액공제 연금의 최초 연금액은 연 900만원, 재보험은 사고보장보험료의 80%이다.

NoteBase

문 18. 우체국 보험상품의 보험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②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여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③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납입기간은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④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연금소득자가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보험료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험료 세액공제 = 일정한 보장성보험료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험기간 = 보험계약의 보장이 계속되는 기간이고,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핵심 구분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며, 월 보험료 합계액이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납입기간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에는 연령별 세율 또는 종신계약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연금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은 연금계좌의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의 과세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9

선지별 해설

① X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2%가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리며, 한도까지 납입한 경우의 최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이다.
틀린 표현: "연간 납입보험료의 12%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올바른 표현: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에서 15%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② X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세 사람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일성 등 법정 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피보험자까지 반드시 동일인일 것을 요구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여야"
올바른 표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일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③ O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 1종인 만기목돈형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또는 전기납이고, 2종인 이자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이다. 따라서 보험종류와 관계없이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중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실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밖의 법정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④ X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계좌 상품이 아닌 일반 연금보험이므로, 여기서 받는 금액을 곧바로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령별 세율이나 종신계약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연금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관계를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보험기간 10년'을 '보험료 납입기간 요건 충족'으로 바꿔 읽게 하는 데 있다. 보험계약이 10년 유지되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상품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④의 함정은 일반 연금보험을 연금저축계좌와 혼동하여 종신계약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다. 상품 이름에 '연금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이 세법상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 세제 문항에서는 먼저 혜택의 종류를 세액공제·보험차익 비과세·연금소득 과세로 나눈다. 그다음 주체, 한도와 공제율,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을 각각 독립된 요건으로 대조한다. ‘보험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납입기간도 길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1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별개이다.

NoteBase

문 19.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Even if schools which are detached from parental control are not tyrannical, it may be argued that they are educationally ineffective. Schools can educate successfully, it is often argued, only when they act in partnership with parents, especially by encouraging parent involvement in the school. The detached-school ideal seems to neglect this important pedagogical point. I contend, however, that while parent involvement is very important in boosting students' achievement, this does not mean that parents must be given greater control over or input into the aims and content of the school. The available research demonstrates that parent involvement programs generally work equally well when there is a gap between the values espoused by the school and by the parents as when both school and parents embrace the same educational values.

① The schools under parental control are educationally ineffective.
② The detached-school ideal appears to neglect the importance of boosting students' achievement.
③ It is argued that the school can educate successfully through the partnership with the parents.
④ Parent involvement programs work well only when both school and parents have the same educational value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학교의 성공적인 교육에는 학부모와의 협력 및 학부모 참여가 중요하지만, 학부모 참여가 곧 학교의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통제 강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학부모 참여(parent involvement)는 학생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관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글은 이를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와 구별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다르더라도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가치가 같을 때와 대체로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under parental control(학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이다. 글은 학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의 통제로부터 분리된 학교'가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학부모의 통제로부터 분리된 학교는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분리된 학교의 이상이 '학생의 성취 향상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바꾼 것이다. 글에서 그 이상이 간과하는 것은 성공적인 교육에 필요한 '학부모와의 협력 및 학부모 참여'라는 교육적 요점이다. 올바르게는 '분리된 학교의 이상은 학부모와의 협력 및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다.
③ O — 글은 학교가 학부모와 협력하고, 특히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장려할 때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고 명시한다. 선지의 partnership with the parents가 본문의 act in partnership with parents와 직접 대응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only when both school and parents have the same educational values(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교육적 가치를 가질 때만)'이다. 글은 양측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 때도 같은 가치를 공유할 때와 대체로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부모의 가치가 다르거나 같아도 대체로 똑같이 효과가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글은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 '통제'의 확대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①은 통제로부터 분리된 학교를 통제 아래 있는 학교로 뒤집고, ④는 '가치가 달라도 효과가 같다'를 '가치가 같을 때만 효과가 있다'로 바꾼다. ②도 간과의 대상을 학부모와의 협력·참여에서 학생 성취 향상 자체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주어, 부정 표현, 범위 한정어를 본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이 글에서는 detached와 under, involvement와 control, equally well과 only when의 대비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학부모 참여는 중요하지만 학부모 통제와 같지 않으며, 교육적 가치가 달라도 참여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NoteBase

문 20. 다음에 제시된 문장이 <보기>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 This all amounts to heightened activity and noise level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be particularly serious for children experiencing auditory function deficit.

< 보기 >

Hearing impairment or auditory function deficit in young children can have a major impact on their development of speech and communication, resulting in a detrimental effect on their ability to learn at school. This is likely to have major consequences for the individual and the population as a whole. ㉠ The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has found from research carried out over two decades that 6–10% of children in that country are affected by hearing loss. ㉡ A preliminary study in New Zealand has shown that classroom noise presents a major concern for teachers and pupils. ㉢ Modern teaching practices, the organization of desks in the classroom, poor classroom acoustics, and mechanical means of ventilation such as air-conditioning units all contribute to the number of children unable to comprehend the teacher's voice. Education researchers Nelson and Soli have also suggested that recent trends in learning often involve collaborative interaction of multiple minds and tools as much as individual possession of information. ㉣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삽입 문장의 지시어와 요약 표현이 가리키는 앞 내용, 그리고 문단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This all’은 앞에서 제시된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받아 요약하는 표현이다. 삽입 문장은 현대적 수업 방식, 책상 배치, 열악한 음향 환경, 환기 장치,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최근 학습 경향이 결국 교실의 활동과 소음 수준을 높인다고 정리한다. 따라서 관련 원인과 경향이 모두 제시된 뒤인 ㄹ에 놓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앞에는 청각 장애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만 제시되어 있어 ‘This all’이 받을 여러 소음 요인이 없다. 올바르게는 교실 소음의 원인과 협력적 학습 경향이 모두 나온 뒤인 ㄹ에 삽입한다.
② X — ㄴ 앞의 내용은 뉴질랜드 아동 중 청력 손실 비율에 관한 조사 결과이므로, 이를 ‘높아진 활동과 소음 수준’으로 요약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소음을 높이는 여러 요인이 제시된 뒤인 ㄹ에 삽입한다.
③ X — ㄷ 앞에는 교실 소음이 교사와 학생에게 큰 우려라는 예비 연구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This all’이 총괄할 구체적인 원인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현대적 수업 방식과 교실 환경, 협력적 상호작용까지 제시된 뒤인 ㄹ에 삽입한다.
④ O — ㄹ 앞에는 교실 소음을 만드는 여러 환경적 요인과 협력적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경향이 모두 제시된다. 삽입 문장의 ‘This all’은 이 내용을 종합하고, 높아진 활동과 소음이 청각 기능이 부족한 아동에게 특히 심각하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noise’라는 단어가 가까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ㄴ이나 ㄷ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This all’의 ‘all’은 하나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앞에서 열거된 여러 소음 원인과 학습 경향 전체를 받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장의 지시어가 단수 내용인지 여러 내용을 총괄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this all’, ‘these factors’, ‘such changes’처럼 앞 내용을 묶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이 받을 구체적인 항목들이 모두 제시된 위치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This all’은 앞의 여러 원인을 총괄한다. 원인 열거가 끝난 뒤에 요약·결과 문장이 온다.

NoteBase